

3

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지원체계 활성화

□ 사업내용

-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술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고, 데이터 기반 연구소기업의 문제해결·사업활동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예산규모 : 총 250백만원, 총 1개 과제

- 지원규모 : 과제별 250백만원 이내
- 총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□ 신청자격 :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점검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·조직을 갖춘 법인(단독 신청)

□ 지원내용

상세내용	1. 연구소기업 현황조사(~2025.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전체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 (종업원수 등), 최근 재무성과(매출액 등),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 조사※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, 「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PMS)」의 경영현황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
	2. 연구소기업 실태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조사 확인결과 특이사항 발생기업 및 미응답 등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현장점검 실시※ 원활한 현장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
	3. 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의 현황정보를 관리·분석하고,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·경영애로 해결, B2B 네트워킹,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연구소기업 사업활동 지원※ (예시) 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유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컨설팅, 전국 연구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 협력프로젝트 연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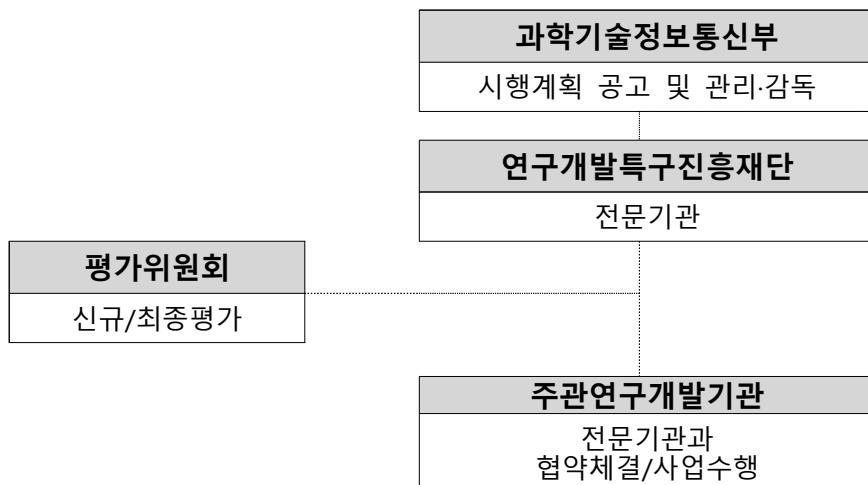
※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,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-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-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-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 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 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
 - ※ 첨부 참고자료(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)에 따르되,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비 중	계
사업목표 및 사업계획	○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	10	20
	○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	10	
운영전략 및 추진역량	○ 사업 내용별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충실성	10	60
	○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(유사사례·실적 등)	15	
	○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	20	
성과목표 및 예산운용	○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	15	20
	○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	10	
합 계		100	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 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접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□ 우대사항: 해당 없음

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·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- ※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 · 양도 ·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- 외국에 소재한 기관 ·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□ 유의사항

- 사업비,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*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* 정량성과지표,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
 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요청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 -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
 -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‘동시수행과제수 제한’ 과제에 해당함
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- ※ 단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 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3.12.7.)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
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
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-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-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-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-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차별성 검토 등	서식 3호	-
6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-
7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
8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
9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흠탕스 발급분	-	최근 3개년도('21 ~ '23) (비영리기관 제외)
10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 년도 기준 (비영리기관 제외)
11 (필수)	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	-	비영리기관 제외
12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7호	해당 시 제출
13	전문연구사업자 증빙(원본대조필) ※ 해당기관(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, 사업화전문 회사 지정서 등)	-	해당 시 제출
14	실적증명서	서식 8호	해당 시 제출 (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 사업수행실적)
15 (필수)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	서식 9호	-
16 (필수)	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	서식 10호	-
17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11호	엑셀(Excel) 파일로 제출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
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

- 담당자 : 표한슬 연구원(innoyuno@innopolis.or.kr/042-865-8934)

6. 기타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,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